

##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나 희 량\*

### I. 서론

세계경제는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 유럽 등 주요 서방 선진진영을 주축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의 이익을 누려왔다. GATT와 이를 승계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 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의 효율성을 무기로 공고화되었고 이는 다시 세계무역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준거와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당위성이 늘 인정되어 온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내시장의 보호라든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적, 선별적 무역조치시행 등 자유무역을 거스르는 보호무역의 흐름은 늘 있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2010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부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로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11월 8일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유리하다는 예상과 달리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heeryang@pknu.ac.kr

자로 알려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권에서 추진하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NAFTA, 한-미 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도 재검토 또는 재협상의 도마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 증대, 미국의 국익이 침해될 경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WTO도 탈퇴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 등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호무역주의의 또 다른 형태인 고립주의가 현실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EU탈퇴(Brexit)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52%의 찬성률로 EU탈퇴가 결정되었다. 이제 영국이 단일시장경제권인 EU에서 탈퇴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자유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역행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WTO 무역분쟁(아래 WTO 분쟁)이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11년까지 한자리 수(8건)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WTO 분쟁건수는 2012년 다시 27건으로 급증하였고 2013년 20건을 기록하였다. 2014년 14건, 2015년 13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16년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지위 부여 문제, 중국산 철강제품, 반도체 등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부과와 같은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등 WTO 분쟁은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WTO 분쟁은 각국이 국익과 자존심을 놓고 대결하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동시에 그 판정결과의 실현에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외개방과 무역을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WTO 분쟁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은 필수적이다.<sup>1)</sup>

동아시아는 이미 세계경제 및 무역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 분쟁에 대한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GDP 비중은 2005년 18.8%에서 2014년 24.6%로 확대되었고 교역비중 또한 2005년 22.3%에서 2014년 25.4%로 증가하였다(World Bank Data Base; World Trade Report 2015).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일본과 중진국내에서도 선두주자인 한국에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새로운 투자처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sup>2)</sup> 동남아시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4년 3.2%로, 교역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4년 6.7%로 증가하였다(World Bank Data Bank; WTO 2015). 해외직접투자 유입액도 2013년 1,254억 달러로 중국의 1,239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UNCTAD 2014).

기존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국제무역 질서는 1990년대 이후 체제전환국들을 비롯한 다수 개도국들의 참여와 역할의 확대로 그 내연과 외연이 다층화, 다변화하고 있다(안덕근 2014, Ahn 2005).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WTO 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의 적극적 참여,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지대의 확대를 통해 그 입지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글로벌 경제로의 급속한

1)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과 아세안(ASEAN)으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10개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규정한다.

2) 동남아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EU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9년 이후 동남아시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편입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 역내 분업화와 가치사슬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동아시아가 하나로 통합된 경제공동체로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경제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WTO 2015).

동남아시아는 캄보디아(2003), 베트남(2006), 라오스(2013) 등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차례로 WTO에 가입, 경제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선발국들의 경제적 위상도 증대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sup>3)</sup> 또한 동남아시아는 기존 양자간 FTA 방식을 넘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광역(메가) FTA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 동남아시아의 세계경제와 글로벌 무역질서로의 통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무역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인프라와 대외협상력에서 불리한 개도국의 입장에 있는 동남아시아에게 법의 지배를 토대로 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에 대한 그 동안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동남아시아가 향후 WTO 분쟁에서 무역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 등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통합단계를 지향하고 있고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산업군에서 보완적,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3) 이외의 동남아시아 7개국은 WTO 출범 전 GATT에 가입하였고 WTO 출범과 함께 자동으로 회원국으로 전환되었다. 브루나이는 1975년, 인도네시아는 1950년, 미얀마는 1994년, 싱가포르는 1973년, 필리핀은 1979년, 태국은 1982년에 각각 GATT에 가입하였다.

있는 경우가 많다.<sup>4)</sup> 역내 국가 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개별국가의 WTO 분쟁은 해당국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전체 산업 및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에 대한 연구는 개별사례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연관성, 지역이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충분히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경제 및 무역의 전체적 차원에서 WTO 분쟁의 추세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비교를 통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중일 FTA, RCEP, TPP, FTAAP 등을 중심으로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역외 국가들과의 WTO 분쟁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각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WTO 분쟁사례를 시기별, 분야별 등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사례의 특성을 도출하고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WTO 분쟁사례에 대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WTO 분쟁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연구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주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WTO 분쟁에 대한 주요 주제와 논의에 대해 알아본

4) 동남아시아 10개국은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키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가 아세안공동체라는 단일지역으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세안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경우 2025년까지 소비 측면에서 단일시장, 생산측면에서 단일생산기반(공동시장)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 등 경제적 자원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역내경제통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 3장에서는 WTO 분쟁의 추세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주요 사안, 특성 및 핵심적 쟁점 등을 도출, 정리한다. 이를 위해 연도별, 시기별, 제소 및 피소, 분쟁 분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예측한다. 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 최근 두 차례의 베트남과 미국 간 새우분쟁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II. 기존문헌 소개 및 방법론

WTO 분쟁과 관련된 기존문헌들은 사례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상법 내지는 국제경제법에 근거한 법리적 해석과 판례에 대한 분석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은 이러한 법리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대신 WTO 분쟁의 추세 및 변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WTO 분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우선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는 2001년부터 진행되어 온 WTO 다자간무역협상 DDA(도하개발어젠더)의 더딘 진전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와 정책의 강화로 인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예를 들어 각 국가들 간의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갈등과 이로 인한 WTO 차원의 분쟁건수는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수엽 2010; 신원규 2014; 이효영 2014). 이는 중국 등 신흥국들의 발로와 함께 세계경제의 위기상황 지속과 침체가 지속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의 시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문돈 2015; 전정기 2011).

이처럼 개도국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 분야의 외연적, 내연적 다층화 및 무역 상대국과의 분쟁 증가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보다 더 적극적, 주도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등 그 정책적 판단과 적용을 바꾸어가고 있다(Ahn 2005). 예를 들어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분쟁을 회피하거나 패널설치 등 WTO의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기보다는 상대국과의 사전협상 및 합의(consultation)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합의뿐만 아니라 패널설치 등을 통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안덕근 2014).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데는 판결문인 패널보고서(panel report) 채택방식에 있어서 역총의(reverse consensus)방식의 도입 등과 같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이와 함께 위에서 언급하

5) ‘만장일치’가 ‘모든 구성원이 찬성하는’ 적극적 차원의 동의라면, ‘총의’는 그 의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구성원도 반대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동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총의는 총의와는 반대로 모든 회원국이 패널보고서 채택에 반대하지 않으면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총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일부 회원국(들)이 무역분쟁과 관련된 패널보고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모든 회원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역총의 방식으로 인해 WTO는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확보하게 되었다. 예상대로 역총의 방식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따라 WTO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결정(패널보고서)이 실제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였듯이 동남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입지와 비중의 확대라는 차원과 함께 WTO 분쟁사례의 증가 및 축적에 따른 학습효과, 제소 시 발생할 이익과 비용에 대한 사전적 예측 및 예상결과에 대한 신뢰성 증가도 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문돈 2015; 안덕근 2014; 허정·정지은 2014; KIEP 2012; 유예리 2008).

최근의 WTO 분쟁의 증가는 동남아시아의 대외무역이 증대하고 세계경제의 가치사슬에 통합됨에 따라 나타나는 추세적인 증가현상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에 대한 자세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차원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동남아시아 전체적 차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문돈 2014; 신원균 2014; 이효영 2014).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WTO 분쟁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역내 산업간, 산업내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의 형성이 고도화되어 있고 상호간 역내무역 비중도 EU, NAFTA에 비해서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나희량 2015).<sup>6)</sup>

본 논문의 방법론은 주로 WTO 분쟁 관련 통계, 자료,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 등 WTO에서 제공하는 무역분쟁 관련 1차자료 및 문서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본 논문이 포함하고 있는

---

상대국에 대해 당사국은 피해에 상응하는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WTO의 무역분쟁해결제도는 GATT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로 인정받게 되었다.

6) 역내무역비중의 경우 EU는 60% 내외, NAFTA는 40% 내외, 아세안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EU 및 NAFTA의 역내무역비중이 정체 내지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아세안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WTO의 분쟁관련 1차자료 조사 및 분석은 분쟁사례 연구를 위해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임에도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무역분쟁에 대한 연구의 경우 수량화된 자료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만으로는 그 사건의 실체와 내용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관련 문서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비교연구를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현장감 있고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과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로 선진국 및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WTO 분쟁사례에만 국한되어 있는 연구의 외연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세계경제 및 무역에서 그 비중과 입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아세안경제공동체라는 단일시장으로 급속하게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전체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온 계량분석의 방법론을 벗어나 WTO에서 생산한 1차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WTO 분쟁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와 무역규모 2위, 해외직접투자 2위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WTO 분쟁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對동남아시아 통상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WTO 분쟁에 대한 이해는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이 처할 수 있는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적합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Ⅲ. 동남아시아 WTO 분쟁 분석

#### 1. 세계 WTO 분쟁

본 절에서는 동남아시아 WTO 분쟁에 대한 논의에 앞서 상대적 비교분석을 위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의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또는 피소된 전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한다.<sup>7)</sup> WTO에 제소 및 피소된 무역분쟁의 연도별,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995년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WTO에 제소된 분쟁건수는 총 508건(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연평균 23.1건이었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평균보다 많은 분쟁건수를 기록하였고 2000년대 후반까지는 감소 추세를,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다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면 1995~2005년까지 분쟁건수는 335건으로 연평균 30.5건이었던 데 비해 2006~2016년까지 분쟁건수는 173건으로 연평균 15.7건으로 전기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분쟁건수는 219건으로 연평균 36.5건으로 전체평균인 23.1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분쟁건수는 116건으로 연평균 23.2건으로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2006

7) 1947~1994년 GATT 체제 하에서도 무역분쟁이 일어났지만 WTO의 출범 이후 분쟁 절차 및 판결에 있어서 실제적인 강제성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WTO 출범연도인 1995년 이후의 사건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다.

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쟁건수는 84건으로 연평균 16.8건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1년부터 2016(7월말 기준)년까지의 분쟁건수는 89건으로 연평균 14.8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WTO 분쟁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2년 27건, 2013년 20건 등으로 평균을 상회하거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0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세계경기침체와 무역의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국가 간 무역갈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14건, 2015년 13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통상마찰 및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

<표 1> WTO 분쟁 연도별, 시기별 추이

연 도	분쟁건수	연평균건수	연 도	분쟁건수	연평균건수
1995	25		2006	21	
1996	39		2007	13	
1997	50		2008	19	
1998	41		2009	14	
1999	30		2010	17	
2000	34		2011	8	
2001	23		2012	27	
2002	37		2013	20	
2003	26		2014	14	
2004	19		2015	13	
2005	11		2016	7	
			1995~2016	508	23.1
1995~2005	335	30.5	2006~2016	173	15.7
1995~2000	219	36.5	2006~2010	84	16.8
2001~2005	116	23.2	2011~2016	89	14.8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저자 정리. 2016년은 7월말 기준.

다음으로 WTO 분쟁에서 제기된 세부협정별 위반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이는 총 508건의 WTO 분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반사항을 21개 세부협정별로 나누어서 연도별, 협정별로 집계한 것이다. 세부협정별로 살펴보면 총 1,151개의 협정위반이 제기되었다. 이 중 GATT 1994와 관련된 위반이 35.8%인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협정이 각각 9.8%, 9.6%인 113건, 111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농업협정에 대한 위반이 6.9%인 79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WTO 설립에 관한 협정(57건), TBT(52건), 세이프가드(46건), 수입허가(45건), SPS(44건), TRIMS(41건) 등의 순이었다.

결국 GATT 1994, 반덤핑, 상계관세, 농업 협정과 관련된 위반의 비중이 62.1%(715건)으로 제기된 총 협정위반의 2/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TT 1994의 경우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 제한금지 등 WTO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반 제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건수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반덤핑, 상계관세 협정의 경우 협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분쟁의 소지가 크다. GATT 1994, 반덤핑, 상계관세 협정에 대한 위반 제기는 매년 지속되어 오고 있다.

협정위반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WTO 분쟁건수의 추이와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연평균 협정위반건수는 52.3건으로 1995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평균을 상회하였고 2000년대는 2006년을 제외하면 그 보다 적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2년, 2013년 각각 80건, 58건으로 평균건수를 상회하였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위에서 설명한 WTO 분쟁건수와 협정위반건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두 항목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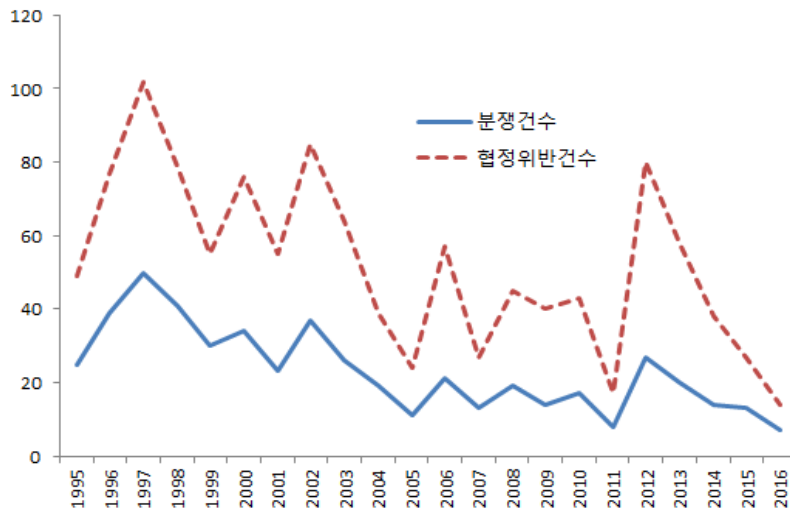
<표 2> WTO 세부협정별 위반건수 연도별 추이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비중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1	2	6	6	6	5	2	1	7	3	2	3	5	4	3	1				57	5.0
Agriculture	3	5	14	5	6	5	2	7	6	2	2	1	2	2	5		3	4	3			2	79	6.9
Anti-Dumping	1	3	3	6	8	11	6	7	6	8	4	8	1	5	3	5	6	6	5			5	113	9.8
Civil Aircraft																							0	0.0
Customs valuation	3	1		1	1	3	1	1				1	1	2					1			1	17	1.5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1	1		1	1	1	1	1	2	1					4	1							15	1.3
GATT 1947							1																1	0.1
GATT 1994	24	28	34	25	17	24	19	34	23	17	11	21	10	14	14	16	8	26	20	12	11	4	412	35.8
Government Procurement			3		1																		4	0.3
Import Licensing	2	1	13	5	4	1	2	3	1	1	1						4	3	3			1	45	3.9
Intellectual Property (TRIPS)			6	5	4	5	3	1	1				1	1	2		3	2					34	3.0
Preshipment Inspection																			2	3			5	0.4
Rules of Origin			2	1				1					1	2									7	0.6
Safeguards			2	2	4	3	7	11	1	2	2				4		5	1			2		46	4.0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5	3	3	5	2	1	5	6					1	2	3	1	3			2	1	1	44	3.8
Services (GATS)	1	3	2	3	1	3	1	1	1	1				1	3	1	1	1				1	24	2.1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8	10	11	3	7	4	7	6	6	1	10	5	5	1	3	2	7	6	3	4	2	111	9.6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8	5	4	5	2	3	2	4					1	3	3	1	4	4	1		1	52	4.5	
Textiles and Clothing	1	6	2	1	1	4	1																16	1.4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7	5	3	1	1	2			1	3	2			1	6	5	1		1	41	3.6	
Protocol of Accession													3	3	5	6	3	6				1	28	2.4
Total (Year)	49	77	102	79	55	76	55	85	64	39	24	57	27	45	40	43	17	80	58	38	27	14	1,151	100.0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agreements\\_index\\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agreements_index_e.htm), 저자 정리. 2016년은 7월말 기준.

년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2012년, 2013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협정위반건수는 2012년 80건으로 폭증하였는데 이는 유럽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무역규모가 감소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WTO 분쟁건수 및 협정위반건수 추이



## 2. 동아시아 WTO 분쟁

본 절에서는 동남아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WTO 분쟁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제소 17건, 피소 14건으로 모두 31건의 WTO 분쟁건수를 기

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분쟁은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14,169.5억 달러로 세계GDP의 1.8%, 무역규모는 10,981.7억 달러로 세계무역규모의 3.0%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시행해온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성장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무역의존도(GDP/무역규모)도 90% 내외 수준을 기록하는 등 WTO 분쟁이 다수 발생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국의 경제 및 무역규모의 비중에 비해 WTO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제소 13건, 피소 34건으로 모두 47건의 WTO 분쟁건수를 기록하였고 따라서 WTO 분쟁 중 중국과 관련된 비중은 9.3%를 차지하였다. 2014년 기준 중국의 GDP는 103,803.8억 달러로 세계GDP의 13.4%, 무역규모는 43,063.3억 달러로 세계무역규모의 11.6%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WTO 분쟁의 비중이 경제 및 무역 규모의 비중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관련된 WTO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제소 22건, 피소 15건으로 모두 37건의 WTO 분쟁건수를 기록하였다. WTO 분쟁 중 일본과 관련된 비중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일본의 GDP는 46,163.4억 달러로 세계GDP의 6.0%, 무역규모는 15,024.0억 달러로 세계무역규모의 4.0%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WTO 분쟁비중이 국내경제 및 무역규모의 비중에 비해 높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경제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중심형 경제구조이고 무역의존도도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에 있어서도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의 경우 WTO 분쟁과 관련해서 제소 33건, 피소 25건을 기록하였다.<sup>8)</sup> 따라서 총 508건의 분쟁 중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WTO 분쟁건수는 58건으로 1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동남아시아의 GDP는 24,745.4억 달러로 세계GDP의 3.3%, 무역규모는 25,518억 달러로 세계무역규모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GDP와 무역규모에 비해 WTO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무역의존도가 100%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지난 20여년 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시행해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베트남 등 후발국 또는 체제전환국들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세계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국들의 견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경제 및 무역규모에 비해 WTO 분쟁 비중이 상당히 높다. 특히 경제규모에 대비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WTO 분쟁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대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1995년

8)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2016년 7월말까지 제소한 총 33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종결된 사건은 총 18건이며, 나머지 15건의 분쟁 사건은 현재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보류되거나 진행 중이다. 종결된 18건의 분쟁사건 중 14건의 사건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이며, 나머지 4건의 사건은 합의단계에서 종료되고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7월말까지 피소된 총 25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종결된 사건은 총 12건이며, 나머지 13건의 분쟁사건은 현재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보류되거나 진행 중이다. 종결된 12건의 분쟁사건 중 8건의 사건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이며, 나머지 4건의 사건은 합의단계에서 종료되고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WTO 출범 이후 총 10건을 제소한 반면 그보다 많은 14건의 피소를 당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내시장과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한 산업정책, 무역정책을 시행해 온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sup>9)</sup>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5년 이전의 제소 건수는 3건에 불과했던 반면 2006년 이후에는 2배가 넘는 7건을 제소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WTO 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은 2006년 WTO 가입 이후 초기에는 공식적인 분쟁을 회피하는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이전의 기초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상대국을 제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WTO; Vo & Nguyen 2009; Sally 2004).

### 3. 동남아시아 WTO 분쟁

본 절에서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연도별, 시기별, 협정분야별 추이를 살펴본다. <표 3>에서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건수는 총 58건으로 연평균 2.6건이었다. 동남아시아는 연도별 추이에서 앞에서 살펴본 세계 추이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 시기별로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쟁건수를 기록하였고 2000년대 후반까지는 감소 추세를,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다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면 1995~2005년까지 WTO 분쟁건수는 30건으로 연평균 2.7건이었지만 2006~2016년까지는 28건으로 연평균 2.5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9)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생산 상품의 소비 촉진과 국내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입제한적인 성격의 정책과 조치들이 시행중에 있다.

&lt;표 3&gt; 동남아시아 WTO 분쟁 연도별, 시기별 추이

연 도	분쟁 건수	연평균 건수	연 도	분쟁 건수	연평균 건수
1995	4		2006	1	
1996	9		2007	0	
1997	2		2008	3	
1998	2		2009	3	
1999	1		2010	3	
2000	5		2011	0	
2001	1		2012	2	
2002	2		2013	5	
2003	2		2014	5	
2004	2		2015	4	
2005	0		2016	2	
			1995~2016	58	2.6
1995~2005	30	2.7	2006~2016	28	2.5
1995~2000	23	3.8	2006~2010	10	2.0
2001~2005	7	1.4	2011~2016	18	3.0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저자 정리. 2016년은 7월말 기준.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분쟁건수는 23건, 연평균 3.8건으로 전체평균인 2.6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분쟁건수는 단 7건, 연평균 1.4건으로 전체평균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쟁건수는 10건, 연평균 2.0건으로 평균을 약간 하회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7월말 기준)까지의 분쟁건수는 18건, 연평균 3.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WTO 분쟁건수는 초기 증가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감소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5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등으로 다시 평균을 상회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세계경기침체와 무역규모의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국가 간 무역갈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동남아시아도 예외는 아님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최근 주요국들의 통상마찰 및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해 WTO 분쟁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WTO 세부협정별 위반사항을 연도별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총 58건의 WTO 분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WTO의 21개 세부협정으로 나누어서 연도별로, 협정별로 집계한 것이다. 먼저 세부협정별로 살펴보면 총 139개의 협정위반 제기 중 GATT 1994에 대한 위반이 37.4%인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덤핑협정 및 농업협정에 대한 위반이 각각 10.8%, 9.4%인 15건, 13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위반이 7.9%인 11건이었고 수입허가(7건), SPS(6건), TRIMS(6건), 선적전 검사(5건), TBT(5건), 관세평가(4건), 세이프가드(4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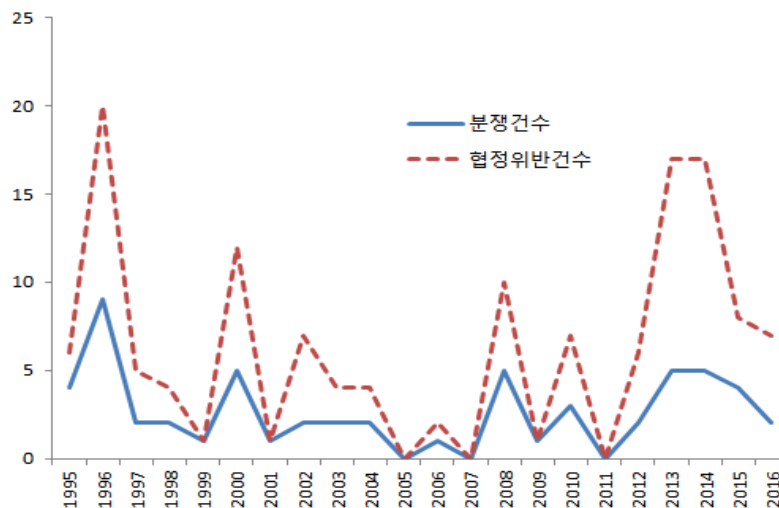
이러한 세부협정별 위반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세계전체 상황과 유사하지만 농업협정에 대한 위반이 두 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수입허가, 선적전 검사, TRIMS, 관세평가 등과 같은 개도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주로 활용하는 무역조치들과 관련된 협정 위반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GATT 1994, 반덤핑협정, 농업협정, 상계관세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반이 65.5%(91건)으로 제기된 총 위반건수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GATT 1994, 반덤핑협정 위반의 경우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고 특히 2010년대 이후 농업협정과 수입허가 부문에 대한 위반의 제기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세계 WTO 협정위반건수의 추이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연평균 협정위반건수는 6.3건으로 1995년 이후 2000년대 초

반까지 평균을 상회하였고 2000년대는 2008년 한해를 제외하면 그보다 적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3년, 2014년 17건으로 다시 평균보다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는 위에서 설명한 WTO 분쟁건수와 협정위반건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분쟁건수와 협정위반건수는 대동소이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995년 이후 초반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2012년, 2013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협정위반건수는 2013년 17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유럽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무역규모가 감소하고 각 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동남아시아 WTO 분쟁건수 및 협정위반건수 추이



<표 4> 동남아시아 WTO 세부협정별 위반건수 연도별 추이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비중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1	1	2					2					1					1					5	3.6
Agriculture									1										3	3		2	13	9.4
Anti-Dumping				1	2	1	2	1	2	1	2	1	2	1	1	1							15	10.8
Civil Aircraft																							0	0.0
Customs valuation													3										4	2.9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1						1	0.7
GATT 1947																							0	0.0
GATT 1994	4	8	2	2	5	1	2	2	2	1	4	1	3	4	1	3	2	5	4	3	1	52	37.4	
Government Procurement																							0	0.0
Import Licensing																			3	3		1	7	5.0
Intellectual Property (TRIPS)		1																	1				2	1.4
Preshipment Inspection																			2	3			5	3.6
Rules of Origin																							0	0.0
Safeguards																					3		4	2.9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1	1	6	4.3
Services (GATS)																							0	0.0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	1	11	7.9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	1	5	3.6
Textiles and Clothing																							2	1.4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6	4.3
Protocol of Accession																							1	0.7
Total (Year)	6	20	5	4	1	12	1	7	4	4	0	2	0	10	1	7	0	6	17	17	8	7	139	100.0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agreements\\_index\\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agreements_index_e.htm), 저자 정리, 2016년은 7월말 기준.

#### 4. 동남아시아 WTO 분쟁 제소현황

본 절에서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중 제소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표 5>는 동남아시아의 WTO 제소현황을 국가별, 협정별, 상품별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우선 WTO 협정의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GATT 1994에서 규정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WTO의 기본적인 원칙과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등 불공정무역행위협정에 대한 위반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TT 1994의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원칙과 관련된 것들로 세부협정 위반에 대한 제소 시 거의 함께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남아시아의 제소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농수축산물 또는 천연자원, 그리고 섬유 및 의류제품 등의 수출이 많다는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TBT), 보건 및 위생(SPS) 관련 협정, 농업협정, 섬유·의류 관련 협정에 대한 위반과 관련된 제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동남아시아의 WTO 제소는 주로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주력 수출품목인 농수축산물, 천연자원, 섬유, 의류 등과 같은 상품과 관련된 분쟁에 집중되어 있다.

<표 6>은 동남아시아 국가별 제소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1건 이상 제소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은 단 한 건의 제소도 제기하지 않았다.<sup>11)</sup> 말레

10) 동남아시아의 산업별 수출비중을 보면 식량·식품 6.6%, 펄프·종이·나무 10.7%, 석유·석탄 17.7%, 섬유 5.4% 등으로 1차산품 및 섬유·의류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각각 1996년, 1995년 단 한 차례의 제소 건수만을 기록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대한 제소로 실제로는 역내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역외국들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 한정된다. 하지만 이들 4개국 중에서도 2010년 이후 제소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단 2개국뿐이다. 태국의 경우 WTO 출범 이후 2000년까지 총 7건의 제소를 제기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8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건의 제소도 제기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경우는 2006년 WTO에 가입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3건의 제소를 제기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1997년, 2005년, 2009년, 2011년, 2016년을 제외하면 소수라도 지속적으로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제소 비중을 보면 총 33건 중 태국이 13건, 인도네시아가 10건, 필리핀 5건 등으로 각각 39.4%, 30.3%, 15.2%를 차지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의 비중이 69.7%로 이들 두 국가에 편중되고 있다. 향후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역내차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야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1) 그 이유로는 이들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WTO 가입한지 이제 수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미얀마의 경우 최근에서야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브루나이를 제외한 3국은 모두 체제전환국 내지는 최빈개도국으로 WTO에 제소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아직까지는 이들 국가들의 무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분쟁이 부재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표 5> 동남아시아 WTO 분쟁 제소현황

번호	피소 상대국	연도	분야	관련장품	상태	결과	진행
DS123	Argentina	1998. 4	Safeguard Measures	Footwear	In consultation	진행중	
DS217	US	2000. 12	AD, Countervailing Measures	US-Offset Act (Byrd Amendment)	Authorization to retaliate grant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312	South Korea	2004. 6	AD	Certain Paper	Compliance proceedings completed with finding(s) of non-compliance	패소	Panel
DS374	South Africa	2008. 5	AD	Uncoated Woodfree Paper	Mutually agreed solution	합의	
DS406	US	2010. 4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SPS, TBT)	Clove Cigarettes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on Implementation notifi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442	EU	2012. 7	AD	Certain Fatty Alcohols	Panel established, but not yet composed	진행중	
DS467	Australia	2013. 10	TBT	Tobacco	Panel composed	진행중	
DS470	Pakistan	2013. 11	AD, Countervailing Measures	Certain Paper Products	In consultation	진행중	
DS480	EU	2014. 6	AD	Biodiesel	Panel composed	진행중	
DS491	US	2015. 3	AD, Countervailing Measures	Certain Coated Paper	Panel composed	진행중	
DS58	US	1996. 10	GATT 1994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Compliance proceedings complet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22	Brazil	1995. 11	Agriculture, GATT 1994	Desiccated Coconut	Report(s) adopted, no further action required	패소	Panel, Appellate Body
DS61	US	1996. 10	GATT 1994, TBT	Shrimp and Shrimp Products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270	Australia	2002. 10	GATT 1994, SPS, Import Licensing	Fresh Fruit and Vegetables	Panel established, but not yet composed	진행중	
DS271	Australia	2002. 10	GATT 1994, SPS	Fresh Pineapple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371	Thailand	2008. 2	GATT 1994, Customs Valuation	Cigarettes	Implementation notifi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표 5> 동남아시아 WTO 분쟁 제소현황(계속)

번호	피소 상대국	연도	분야	관련상품	상태	결과	진행
Singapore							
DS1	Malaysia	1995. 1	GATT 1994, Import Licensing	Polyethylene and Polypropylene	Settled	합의	
DS17	EU	1995. 10	GATT 1994, Customs Valuation	Rice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35	Hungary	1996. 3	Agriculture	Agricultural Products	Settled	합의	Panel
DS47	Turkey	1996. 6	GATT 1994, Textiles and Clothing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58	US	1996. 10	GATT 1994(Import Prohibition)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Compliance proceedings complet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181	Colombia	1999. 9	Textiles and Clothing	Plain Polyester Filaments	Settled	합의	
DS205	Egypt	2000. 9	GATT 1994, SPS	Canned Tuna with Soybean Oil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217	US	2000. 12	AD, Countervailing Measures	US - Offset Act (Byrd Amendment)	Authorization to retaliate grant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242	EU	2001. 12	GATT 1994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283	EU	2003. 3	Agriculture, GATT 1994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gar	Report(s) adopted, with recommendation to bring measure(s) into conformity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286	EU	2003. 3	GATT 1994	Frozen Boneless Chicken Cuts	Implementation notifi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324	US	2004. 12	GATT 1994, AD	Shrimp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343	US	2006. 4	GATT 1994, AD	Shrimp	Implementation notified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383	US	2008. 11	GATT 1994, AD	Polyethylene Retail Carrier Bags	Implementation notified	승소	Panel
DS404	US	2010. 2	GATT 1994, AD	Certain Shrimp	Report(s) adopted, with recommendation to bring measure(s) into conformity	승소	Panel
DS429	US	2012. 2	GATT 1994, AD, DSU	Certain Shrimp	Report(s) adopted, with recommendation to bring measure(s) into conformity	승소	Panel, Appellate Body
DS496	Indonesia	2015. 6	Safeguard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	Panel composed	진행중	
	Vietnam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lt;표 6&gt; 동남아시아 국가 연도별 제소현황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Total
1995			1	1	1		3
1996		1	1		3		5
1997							
1998	1						1
1999					1		1
2000	1				2		3
2001					1		1
2002			2				2
2003					2		2
2004	1				1		2
2005							
2006					1		1
2007							
2008	1		1		1		3
2009							
2010	1					1	2
2011							
2012	1					1	2
2013	2						2
2014	1						1
2015	1					1	2
2016							
Total	10	1	5	1	13	3	33
비중(%)	30.3	3.0	15.2	3.0	39.4	9.1	100.0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저자 정리. 2016년은 7월말 기준.

<표 7>은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시기별 제소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면 1995~2005년까지 20건, 2006~2016년 13건으로 전기가 후기에 비해 제소건수가 많다. <표 8>에서 5년 단위로 나누어 볼 경우 WTO 출범 직후 시기인 1995~2000년에 총 13건의 제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후 나머지 시기의 6~7건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건수이다. 13건의 제소 중 절반이 넘는 7건이 태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태국이 WTO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시기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 모두가 제소에 참여하였다. 이는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GATT체제보다 실효성과 강제성이 강화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WTO 출범 전까지 제소를 연기하다가 WTO 출범 후 제소를 개시하는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소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제외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2011년 이후 제소 건수가 전무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그 이전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2010년대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 총 7건의 제소 중 인도네시아는 5건의 제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최근 적극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있고 세계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무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공세적 기조로 선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7> 동남아시아 국가 시기별(10년 단위) 제소현황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Total	비중 (%)
건 수	1995~2005	3	1	4	1	11	0	20	60.6
	2006~2016	7	0	1	0	2	3	13	39.4
비 중 (%)	1995~2005	15.0	5.0	20.0	5.0	55.0	0.0	100.0	
	2006~2016	53.8	0.0	7.7	0.0	15.4	23.1	100.0	

&lt;표 8&gt; 동남아시아 국가 시기별(5년 단위) 제소현황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Total
1995~ 2000	2	1	2	1	7		13
2001~ 2005	1		2		4		7
2006~ 2010	2		1		2	1	6
2011~ 2016	5					2	7

<표 9>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소 상대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상대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대별해 보면 선진국은 총 33건 중 21건, 개도국은 12건으로 각각 63.6%와 39.4%를 차지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미국, EU 등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소 상대국이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다수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제소 상대 선진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13건, EU가 6건, 호주가 2건으로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한중일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2건의 제소 중 선진국에 대한 제소는 40건, 개도국에 대한 제소는 12건으로 각각 76.9%, 23.1%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은 동남아시아에 비해 선진국에 대한 제소가 상대적으로 더욱 빈번하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면 한중 2개국의 제소는 1건만을 제외하면 모두 선진국에 대한 제소이다. 한중일은 주요 수출품목이 공산품에 치중되어 있고 공산품의 수출 또한 주로 선진국을 향한 것이므로 선진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는 공산품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중요하지만 농수축산물, 천연자원 등 1차산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차산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1차산품의 수입 상대국들과의 분쟁도 다수 발생하였다.

아울러 한중일은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 대한 제소 건수인 40건 중 미국에 대한 제소는 28건으로 70.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EU가 8건으로 20%, 일본과 호주가 각각 2건으로 각각 5%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미국에 대한 비중이 13건으로 對선진국 제소 건수인 21건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EU에 대한 제소는 6건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한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제소비중이 낮고 EU에 대한 제소비중이 높다. 이러한 양상은 동남아시아가 한중일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과의 무역비중이 낮고 EU와의 무역비중은 비슷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표 9> 동남아시아 WTO 제소 상대국 현황

	선진국	선진국 상세	개도국
Indonesia	6	미국(3), EU(2), 호주(1)	4
Malaysia	1	미국(1)	
Philippines	3	미국(2), 호주(1)	2
Singapore			1
Thailand	9	미국(5), EU(4)	4
Vietnam	2	미국(2)	1
Total	21	미국(13), EU(6), 호주(2)	12
비중(%)	63.6		39.4

12) 2014년 기준 동남아시아 무역비중을 보면 미국 8.4%, EU 9.8%이다. 우리나라의 무역비중은 미국 10.6%, EU 10.4%이고 중국은 미국 12.8%, EU 14.3%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 13.6%, EU 9.9%이다. 동남아시아와 한중일을 비교해 보면 對미국 무역비중이 對EU 무역비중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lt;표 10&gt; 한중일 WTO 제소 상대국 현황

	선진국	선진국 상세	개도국
Korea	16	미국(11), EU(3), 일본(2)	1
China	13	미국(9), EU(4)	
Japan	11	미국(8), EU(1), 캐나다(2)	11
Total	40	미국(28), EU(8), 일본(2), 캐나다(2)	12
비중(%)	76.9		23.1

<표 11>은 위에서 살펴본 제소의 판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33건의 제소 중 15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보류된 사건이다. 이를 제외한 18건에 대한 분쟁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동 18건의 사건의 승소 및 패소 여부를 살펴보면 18건 중 12건은 승소, 4건은 패널심리이전 또는 심리과정 중 당사국 간 합의, 나머지 2건은 패소로 나타났다. 이 중 ‘합의’의 경우는 제소 당사국이 적어도 만족할 수준이 되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공식적인 승소는 아니더라도 ‘승소’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승소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8건의 제소결과 중 승소(합의 포함)는 16건(88.9%), 패소는 2건(11.1%)으로 대부분 승소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EU 등 통상부문 선진국들과의 분쟁에서 대부분 승소를 하였다는 점은 ‘힘의 논리’(rule of power)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근간으로 하는 WTO의 다자간 무역질서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조치로 인해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 보다 적극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활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WTO 가입이 늦었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 최근 민주화와 함께 개혁·개방을 통한 무역확대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제소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후발국들도 세계경제로의 통합 수준이 높아지고 무역규모가 증가할수록 자국의 무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과 더불어 역내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은 역내 경제공동체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다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협상력에 있어서도 다수의 국가들이 같이 참여할 경우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서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은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11> 동남아시아 WTO 제소 판결현황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승소	12	36.4	승소+합의	16	88.9
합의	4	12.1			
패소	2	6.1	패소	2	11.1
진행중	15	45.5			
합계	33	100.0			

### 5. 동남아시아 WTO 분쟁 피소현황

다음으로 <표 12>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피소현황을 국가별, 협정별, 상품별 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동 피소사건들을 WTO 세부협정별로 나누어 보면 GATT 1994에서 규정하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WTO의 기본적인 원칙, 수입허가(Import Licensing), 선적전검사(Preship Inspection), 무역과 관련된 투자(TRIMs),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제소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제소의 경우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불공

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소가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피소의 경우 주로 개도국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수입허가, 선적전 검사, 무역관련 투자, 관세평가 등과 관련된 피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WTO 피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및 완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13>은 동남아시아 개별국가들의 피소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1건 이상 피소된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4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6개국은 단 한 건도 피소되지 않았다. 이 중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4개국은 최빈개도국 내지는 비시장경제 국지위에 있는 국가들로 상대국이 WTO 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피소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1995년 단 한 차례만 피소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싱가포르에게 피소된 것으로 실제적으로 역외국가에 의한 피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실제로 피소된 사례가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3개국으로 한정된다. 이들 3개국 중에서도 2010년대 이후 피소된 국가는 오직 인도네시아뿐이다. 이 시기의 피소건수도 10건으로 총 피소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산업과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배치되는 국내규범과 제도들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피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연도별로는 앞에서 살펴본 제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로 피소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0년대 이전과 2010년대 이후로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2000년대 이전의 피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표 12> 동남아시아 WTO 분쟁 피소현황

번호	피소 상대국	연도	분야	관련상품	상태	결과	진행
DS54	EU	1996. 10	GATT 1994,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RIMs	Automobile Industry	Implementation notified	패소	Panel, Appellate Body
DS55	Japan	1996. 10	GATT 1994,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RIMs	Automobile Industry	Implementation notified	패소	Panel, Appellate Body
DS59	US	1996. 10	GATT 1994,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RIMs	Automobile Industry	Implementation notified	패소	Panel, Appellate Body
DS64	Japan	1996. 11	GATT 1994,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RIMs	Automobile Industry	Implementation notified	패소	Panel, Appellate Body
DS455	US	2013. 1	Import Licensing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Panel established, but not yet composed	진행중	
DS465	US	2013. 8	Import Licensing, Preshipment Inspection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466	New Zealand	2013. 8	Import Licensing, Preshipment Inspection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477	New Zealand	2014. 5	Import Licensing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Panel composed	진행중	
DS478	US	2014. 5	Import Licensing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Panel composed	진행중	
DS481	EU	2014. 6	DSU	Clove Cigarettes	Settled	합의	
DS484	Brazil	2014. 10	TBT, SPS	Chicken meat and Chicken products	Panel composed	진행중	
DS490	Taiwan	2015. 2	Safeguard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	Panel composed	진행중	
DS496	Vietnam	2015. 6	Safeguard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	Panel composed	진행중	
DS506	Brazil	2016. 4	TBT, SPS	Bovine Meat	In consultation	진행중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표 12> 동남아시아 WTO 분쟁 피소현황(계속)

번호	피소 상대국	연도	분야	관련상품	상태	결과	진행	
Malaysia	DS1	Singapore	1995. 1	GATT 1994, Import Licensing	Polyethylene and Polypropylene	Settled	합의	
	DS74	US	1997. 4	Agriculture, GATT 1994, Import Licensing, TRIMs	Pork and Poultry	Settled	합의	
	DS102	US	1997. 10	Agriculture, GATT 1994, Import Licensing, TRIMs	Pork and Poultry	Settled	합의	
Philippines	DS195	US	2000. 5	GATT 1994,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RIMs	Motor Vehicle	Panel established, but not yet composed	진행중	
	DS215	S. Korea	2000. 12	GATT 1994, AD	Polypropylene Resins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396	EU	2009. 7	GATT 1994	Distilled Spirits	Implementation notified	패스	Panel, Appellate Body
	DS403	US	2010. 1	GATT 1994	Distilled Spirits	Implementation notified	패스	Panel, Appellate Body
	DS122	Poland	1998. 4	GATT 1994, AD	H. Beams	Implementation notified	패스	Panel, Appellate Body
Thailand	DS370	EU	2008. 1	GATT 1994, Customs Valuation	Certain products	In consultations	진행중	
	DS371	Philippines	2008. 2	GATT 1994, Customs Valuation	Cigarettes	Implementation notified	패스	Panel, Appellate Body
	DS507	Brazil	2016. 4	Agriculture,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ugar	In consultations	진행중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저자 정리.

WTO 출범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제기된 피소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호무역조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유사한 피소 사건에 대해서도 개별 국가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역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3> 동남아시아 국가 연도별 피소현황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Total
1995		1			1
1996	4				4
1997			2		2
1998				1	1
1999					
2000			2		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	2
2009			1		1
2010			1		1
2011					
2012					
2013	3				3
2014	4				4
2015	2				2
2016	1			1	2
Total	14	1	6	4	25
비중(%)	56.0	4.0	24.0	16.0	100.0

출처: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저자 정리. 2016년은 7월말 기준.

<표 14>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시기별 피소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앞서와 같이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해 보면 전기 10건, 후기 15건으로 전기에 비해 후기의 피소건수가 많았다. 특히 <표 15>에서처럼 5년 단위로 나누어 볼 경우 WTO 출범 직후 시기인 1995~2000년에 총 10건의 피소를 당한데 비해 이후 2010년까지는 단 4건으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2011~2016년 피소건수는 다시 11건으로 급증하였다. WTO 출범 이후 5년 간 10건의 제소 중 인도네시아 4건, 말레이시아 1건, 필리핀 4건, 태국 1건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비중이 높았다. 동 시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요 4개국 모두가 피소를 당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WTO 출범의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2010년까지 4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필리핀과 태국을 제외하면 피소는 전무하였다.

<표 14> 동남아시아 국가 시기별(10년 단위) 피소현황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Total
건수	1995~2005	4	1	4	1	10
	2006~2016	10	0	2	3	15
비중(%)	1995~2005	40.0	10.0	40.0	10.0	100.0
	2006~2016	66.7	0.0	13.3	20.0	100.0

2010년 이후에는 피소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피소 사건 11건 중 태국 1건을 제외한 10건이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제소도 증가하지만 피소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시장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5> 동남아시아 국가 시기별(5년 단위) 피소현황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Total
1995~2000	4	1	4	1	10
2001~2005					0
2006~2010			2	2	4
2011~2016	10			1	11

<표 16>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피소한 상대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대별해 보면 총 25건의 피소 사건 중 선진국은 17건, 개도국은 8건으로 각각 68.0%와 32.0%를 차지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EU 등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소 상대국이 선진국이 다수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선진국별로 보면 미국이 9건, EU가 4건, 일본이 2건, 뉴질랜드 1건, 싱가포르가 1건 등으로 제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EU의 비중이 크다.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5건의 피소사건 중 선진국은 57건, 개도국은 8건으로 각각 87.7%, 12.3%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해 볼 때 선진국에 의한 피소가 상대적으로 더욱 빈번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한중 2개국의 피소 사건은 6건을 제외한 44건이 선진국에게 피소된 사건이다. 한중일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이 공산품에 치중되어 있고 공산품

의 수출이 주로 선진국을 향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에 의한 피소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의 경우 공산품의 對선진국 수출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천연자원 등 1차산품의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차산품의 수출에 있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1차산품의 수입대상 개도국들과의 분쟁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6> 동남아시아 국가 WTO 피소 상대국 현황

	선진국	선진국 상세	개도국
Indonesia	10	미국(4), EU(2), 뉴질랜드(2), 일본(2)	4
Malaysia	1	싱가포르(1)	
Philippines	5	미국(4), EU(1)	1
Thailand	1	EU(1)	3
Total	17	미국(9), EU(4), 일본(2), 뉴질랜드(1), 싱가포르(1)	8
비중(%)	68.0		32.0

<표 17> 한중일 WTO 피소 상대국 현황

	선진국	선진국 상세	개도국
Korea	15	미국(6), EU(4), 일본(2), 캐나다(2), 호주(1)	1
China	29	미국(17), EU(7), 일본(2), 캐나다(3)	5
Japan	13	미국(6), EU(6), 캐나다(1)	2
Total	57	미국(29), EU(17), 일본(4), 캐나다(6), 호주(1)	8
비중(%)	87.7		12.3

<표 18>은 피소된 사건의 판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25건의 피소 사건 중 13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보류된 사건이다. 나머지 12건에 대한 분쟁해결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동 12건의 사건의 승소 및 패소 여부를 살펴보면 12건 중 승소는 전무하고 4건은 패널심리 이전과 심리 과정 중 당사국 간 합의로, 8건은

패소로 나타났다. 이 중 합의는 제소 당사국이 적어도 만족할 수준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합의는 피소국의 입장에서 패소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 경우 ‘합의’는 ‘패소’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2건의 피소 판결 중 승소는 전무하고 패소(합의 포함)는 12건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WTO 분쟁에서 패소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제소 사건에서 대부분 승소를 하였다는 점과 대칭되는 모습이다. 피소 사건의 경우 제소와는 달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든 사건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선진국들의 힘의 논리(rule of power)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주창하는 WTO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피소 시 모든 사건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배치되는 무역정책, 조치를 시행해 왔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가급적 피소를 당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배치되는 국내 산업 및 무역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WTO 분쟁의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용을 통해 유사한 WTO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일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역내전체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사례로 인한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역내 국가 간 정보 및 분쟁 관련 노하우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과 이에 따른 무역의 정체 및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강화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제소

및 피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동남아시아 개별국가 그리고 역내 차원의 대응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동남아시아 국가 피소 판결현황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승소	0	0.0	승소	0	0.0
합의	4	16.0			
패소	8	32.0	패소+합의	12	100.0
진행중	13	52.0			
합계	25	100.0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동남아시아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자국 및 역내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하면서도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WTO 분쟁에 피소되지 않기 위해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범,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WTO 협정 및 상대방 국가들의 무역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과 인프라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과 더불어 역내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하여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 역내경제공동체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발 주자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에 대한 선발국들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과 대응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보호무역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남아시아 역내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IV. 베트남 사례연구를 통한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방안

위 3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제소, 피소 등의 추이와 현황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필요성 및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본 장에서는 베트남의 최근 제소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TO 분쟁은 당사국들의 국가적 역량, 대상 상품, 대외 협상력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불리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분쟁에 참여한다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베트남은 2006년에서야 WTO에 가입하였고 WTO 분쟁의 경험도 거의 전무한 불리한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베트남 産 수입냉동새우에 대한 반덤핑관세에 대해 두 번의 제소를 통해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베트남의 승소는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과 미국 간 새우 WTO 분쟁은 2009년 미국이 베트남 産 수입냉동새우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의 새우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베트남은 반덤핑관세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이미 이전부터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반발해 왔다. 하지만 WTO 가입 이전에는 양자 간 협상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반덤핑관세를 감수해 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베트남은 2006년 WTO 가입 후 다자적 차원의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

용이 가능해지자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아직 시장경제국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 개발도상국인 베트남産 새우수입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조치라고 비난하였다.

2009년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가 발표한 반덤핑관세는 베트남, 브라질, 중국, 에콰도르, 인도 그리고 태국에서 수입된 새우가 시장 가격 이하로 팔리고 있다고 남부새우생산자연합회(SSA) 등을 비롯한 미국 내 새우양식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이후 결정되었다.<sup>13)</sup> SSA는 베트남, 중국, 태국 등 6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 수입되는 새우가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회원사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수입새우에 대해 30~267%의 수입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2010년부터 베트남産 수입냉동새우에 대해 4.13~25.76%의 새로운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5년 간 한차례 더 반덤핑관세부과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10년 2월 미국이 WTO 반덤핑 협정과 GATT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WTO에 제소(1차 제소)하였다. 이후 3개월 동안의 미국과의 협의가 실패함에 따라 2010년 5월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의거 WTO 분쟁해결기구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panel)이 설치되어 동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베트남이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해 WTO 협정위반이라고 제기한 5가지 제

13) 미국의 수입새우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8개주 연합회인 남부 새우생산자연합회의 지원 아래 새우양식업자들은 값싼 수입새우가 미국 새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생산금액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소 사항 중 4개에서 베트남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실제로 베트남이 승소하게 되었다. WTO는 패널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적용한 반덤핑관세는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상소를 포기하고 이행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패널은 미국이 반덤핑관세율의 산정 시 소위 zeroing(제로잉) 방식을 적용한 것은 WTO의 반덤핑협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할 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덤핑 판정을 받은 품목의 평균치만을 반영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이러한 산정방식은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비교 가능한 모든 상품” 가격의 평균값을 채택하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패널은 미국은 WTO 반덤핑협정과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 판결은 미국이 이전 2차, 3차 반덤핑조사 시 제로잉 방식을 적용했다는 베트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서 4차 이후의 반덤핑조사에 대한 판단은 패널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시하였다.

1차 제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승소하였고 미국은 패널의 판정을 인정하고 양 국은 이행을 위한 합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행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미국이 새로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자 베트남은 2년 후인 2012년 2월 추가적으로 미국의 베트남 産 수입내 동세우에 대한 반덤핑관세조치에 대해 제소하게 된다.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위의 두 개 제소 건은 그 대상 상품과 위반대상 협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이 2차로 제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이 1차 제소에서 승소하고 제로잉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패널판결을 이끌어낸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1차 제소에 대한 패널판결 이후 2차 제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법리적 판결을 요구하

였다. 예를 들어 1차 제소에서는 제로잉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5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던데 반해 2차 제소에서는 GATT 1994, 반덤핑협정 등을 포함한 WTO 협정위반과 관련한 8개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2차 제소에 대해 양 국가 간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2013년 2월 패널이 설치되어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1월 패널은 베트남이 제기한 8개의 이의 사항 중 6개의 사항에 대해 베트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1차 제소에 이어 2차 제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승소하였다. 더 나아가 베트남은 2015년 1월 패널판정이 베트남에게 유리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널판정에 만족할 수 없음을 표명하고 패널판정의 WTO 협정과 법률적 합치성에 대해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상소하였다. 베트남이 상소기구에 상소한 것은 WTO 가입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지지하고 2015년 4월 상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결국 이렇게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2차 제소가 실질적인 베트남의 승소로 귀결됨에 따라 베트남과 미국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양국 간 조정일정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정을 위한 이행기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다시 2016년 8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중재기구가 설치되어 합리적 이행을 위한 중재가 진행 중에 있다. 2차 제소에서는 1차 제소와는 다르게 최종적으로 상소기구의 판정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미국이 1차 제소의 경우처럼 합의와 이행에 있어서 그 시행을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9>~<표 22>는 1차 및 2차 제소를 비교한 것

이다. 먼저 <표 19>는 1차 및 2차 제소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0>은 1차 및 2차 제소 시 베트남이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해 WTO협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협정의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제소에 비해 2차 제소에서는 1차에서 제기한 위반 사항들에 덧붙여서 GATT 1994 X:3(a), 반덤핑협정 17.6(i), 그리고 분쟁해결절차협정의 3.7, 19.1, 21.1, 21.3, 21.5항 등에 대한 위반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2차 제소는 1차 제소에 대한 패널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위반사항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이 1차 제소 시 이루어진 패널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베트남이 다시 동 위반사항을 포함한 2차 제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표 21>과 <표 22>는 각각 1차 및 2차 제소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2차 제소만 해당)의 주요 판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차 제소 시의 판결내용과 2차 제소 시의 판결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록 동일한 제목 하에 제소이지만 1차 제소에 비해 2차 제소에서는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1차 제소에서는 5개의 주요 이의 사항에 대해 4개 사항에서 베트남이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2차 제소에서는 이보다 많은 8개의 주요 이의 사항이 제기되었고 이 중 6개 사항에서 베트남이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또한 2차 제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패소한 미국이 상소기구에 상소를 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승소를 한 측인 베트남이 상소하였다. 상소기구에서는 베트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널의 판결을 최종 지지하였지만 베트남은 자국에 유리한 패널의 판결에 대해서 그 법리적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9> 베트남 對미국 1차 및 2차 제소개요

	1차 제소 (DS404)	2차 제소 (DS429)
상대국 및 제목	미국, 베트남 産 냉동수입새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베트남 産 냉동수입새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제소일자	2010. 2. 1	2012. 2.20
패널구성	2010. 7.26	2013. 7.12
패널보고서	2011. 7.11	2014.11.17
상소	-	2015. 1. 6
상소보고서	-	2015. 4. 7
이행합의 (이행기간)	2011.10.31. (2012. 7. 2 종료)	2015.12.15. (2016. 8.31 종료)

<표 20> 1차 및 2차 제소에서 제기된 WTO 협정 위반사항

1차 제소(DS404)	2차 제소(DS429)
Articles I, II, VI:1 and VI:2 of the GATT 1994	Articles I:1, VI:1, VI:2 and X:3(a) of the GATT 1994
Art. 1, 2.1, 2.4, 2.4.2, 5.8, 6.8, 6.10, 9, 9.1, 9.3, 9.4, 11, 11.1, 11.2, 11.3, 18.1, 18.3, 18.4, Annex II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s 1, 2.1, 2.4, 2.4.2, 6, 9, 11, 17.6(i) and Annex II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XVI:4 of the WTO Agreement	Article XVI:4 of the WTO Agreement
Viet Nam's Protocol of Accession.	Articles 3.7, 19.1, 21.1, 21.3 and 21.5 of the DSU
	Viet Nam's Protocol of Accession

<표 21> 1차 제소 주요 판결 정리

제기된 위반 사항	주요 이슈	위반 여부
반덤핑협정 2.4	반덤핑관세율 산정 시 제로잉 사용	○
반덤핑협정 2.4, GATT 1994 VI:2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율 산정 시 그 동안 유지해 온 제로잉 산정 방식 그 자체(as such)	○

반덤핑협정 6.10, 6.10.2, 9.3, 11.1, 11.3	반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상대국 관련 업체들의 개수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자발적 답변을 제한	×
반덤핑협정 9.4	제로잉 사용으로 인해 반덤핑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다른 모든(all others)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관세율 적용 타당성	○
반덤핑협정 9.4, 6.8	베트남 국영기업(Vietnam-wide entity) 등에 대한 다른 모든(all others)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관세율 적용 타당성	○

<표 22> 2차 제소 주요 판결 정리

제기된 위반 사항	주요 이슈	위반 여부
반덤핑협정 9.3, GATT 1994 VI:2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율 산정 시 8차의 행정검토까지 유지해 온 제로잉 산정 방식 그 자체(as such)	×
반덤핑협정 9.3, GATT 1994 VI:2	반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해 1~3 행정검토 시 사용한 제로잉 산정 방식 (as applied)	○
반덤핑협정 6.10, 9.2	베트남 기업들에 대해 비시장경제국지위를 적용하여 확실적인 반덤핑관세율 산정 및 부과	○
반덤핑협정 6.8, 9.4, Annex II	제로잉 사용으로 인해 반덤핑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다른 모든(all others)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관세율 적용 타당성	○
반덤핑협정 11.3	반덤핑관세부과 일몰여부에 대한 행정검토 시 반덤핑협정 규정에 위배되는 기존의 반덤핑관세율 사용	○
반덤핑협정 11.2	반덤핑관세 부과 후 해당 개별기업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한 반덤핑 철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반덤핑협정 11.2	제로잉 방식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해당 개별기업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이 반영되지 않음	○
분쟁해결절차	미국 URAA 129(C)(1)이 WTO 분쟁해결절차규정 위반	×

위에서 베트남의 두 차례에 걸친 베트남産 수입냉동새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WTO의 제소의 진행경과와 그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

들이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베트남과 미국 간 WTO 분쟁은 새우라는 동일한 품목과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동일한 제소 사항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제소를 연이어 제기함으로써 제소 당사국인 베트남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1차 제소 시 간과하거나 누락되었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2차 제소에서는 1차 제소에 비해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법리적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일한 품목 및 협정위반에 대해 복수(複數)의 제소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WTO 분쟁해결절차의 규정 상 동일한 품목 및 위반이라 하더라도 제소국이 제기하는 이의 사항이 다르면 추가적으로 다시 제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1차, 2차 제소는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리적 다툼을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소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로잉은 미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덤핑관세율 산정 방식으로 베트남의 제소 전에도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20여 건이 넘는 제로잉 관련 WTO 제소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제로잉 관행은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제로잉은 WTO 협정위반이고 이에 대해 제소했을 때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WTO 초년생인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제소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로잉 방식의 반덤핑관세부과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크고 또 그 승소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WTO 제소를 통해 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



아 국가들은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WTO 분쟁과 분쟁해결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활용 및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는 이러한 WTO 분쟁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구축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유사한 분쟁사례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안에 적용 가능한 모든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 당사국이 심리에 회부한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따라서 제소국은 위반 사항 또는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충분한 사실근거와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제소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남아시아는 WTO 분쟁 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 제소 사건은 비록 베트남이 제소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베트남과 이해를 같이 하는 다수의 이해당사국들이 제3자로서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차 제소 시에는 제3자 자격으로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태국이 참여하였다. 2차 제소 시에는 중국, 에콰도르, EU, 일본, 노르웨이, 태국 등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로잉의 경우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이들 주요 개도국들의 참여는 WTO 분쟁에서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분쟁 발생 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결 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 등

향후 역내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역내의 생산공정 및 분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역내의 가치사슬이 보다 정교하고 공고하게 연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분쟁의 경우에도 개별국가가 제소 및 피소될 경우 그 영향이 당사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베트남의 새우와 관련된 제소의 경우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새우 수출 비중이 큰 태국, 캄보디아 등에게는 중요한 통상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정보공유, 공동연구 등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역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추이와 그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이미 20주년이 넘어섰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부응하는 글로벌 무역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994년 단순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형태로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경제통합은 20여 년이 지난 2015년 12월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다자간무역질서의 대표인 WTO와 지역경제통합체인 아세안은 20여 년이라는 비슷한 나이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그렇게 큰 연관성을 가지지는 못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WTO의 다자간무역질서 속에 밀접

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WTO와 동남아시아의 교차점을 예상하여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개별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역내경제 전체차원의 무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추이와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세계와 대동소이한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도 세계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는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소의 경우에도 2010년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경제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는 해당국가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묶여져 있는 역내국가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국가들이 처할 수 있는 유사한 WTO 분쟁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무

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 무역의 선택이 강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10년대 이후 WTO 제소 및 피소 대상 주요 국가가 되었다. 적절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고 피소를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논문은 베트남의 사례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은 미국의 수입냉동새우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WTO에 제소함으로써 결국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두 번의 제소를 거치면서 미국의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법리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제소 시에는 1차 제소보다 다수의 사항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게 되었다. 제소 상대국이 비록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과 미국의 새우 관련 분쟁을 제외하면 다른 제소 및 피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 쟁점 및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의 판정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게 되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분쟁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TO 분쟁의 사례를 활용한 FTA 분쟁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에 대한 연구는 WTO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온 다자간무역질서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에서 확대, 심화되고 있는 FTA

체제에서도 충분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WTO 분쟁사례는 FTA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측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벤치마킹의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의 경우 자체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FTA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의 분쟁 사례 또는 판례가 중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FTA 분쟁에 대한 사전적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FTA 분쟁의 분야 및 가능성을 예상하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나수엽. 2010. “중·미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지역경제 포커스』 4(17): 1-9.
- 나희량. 2014.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1): 31-84.
- 문돈. 2015. “중국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소극적 회피주의에서 대응적 법률주의로.” 『한국정치학회보』 49(1): 99-129.
- 신원규. 2014. “국제통상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성과의 재해석.” 안덕근 회 편,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서울: 진인진. 48-111.

- 안덕근. 2014. “국제경제체제의 발전과 국제통상분쟁 확산 의미와 시사점.” 안덕근 외 편,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서울: 진인진. 11-36.
- \_\_\_\_\_. 2014. “WTO 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안덕근 외 편,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서울: 진인진. 394-433.
- 유예리. 2008. “중국의 WTO분쟁해결체제 활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13(2): 205-222.
- 이효영. 2014. “국제경제체제의 위기확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충돌.” 안덕근 외 편,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서울: 진인진. 112-147.
- 전정기. 2011.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무역학회지』 36(4): 137-161.
- 허정 · 정지은. 2014.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보복성 반덤핑 제소 및 관세부과의 불균형 패턴에 관한 실증연구.” 안덕근 외 편,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서울: 진인진. 296-326.
- KIEP북경사무소. 2012.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4(4): 1-21.
- Ahn, Dukgeun. 2005. “WTO Dispute Settlements in East Asia.”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NBER-East Asia Seminar on Economics* 14.
- Sally, Razeen. 2004. *Southeast Asia in the WTO*. Singapore: ISEAS.
- Vo, Thi Thanh & Nguyen, Ahn Duong. 2009. “Vietnam after Two Years of WTO Accession: What Lessons Can be Learnt?” *ASEAN Economic Bulletin* 26(1): 115-135.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http://unctad.org/en/Pages/DIAE/>.

World Bank Data Base. <http://databank.worldbank.org/data>.

WTO. 2015. *World Trade Report*. <http://www.wto.org>.

WTO. 2015. *World Trade Statistics*. <http://www.wto.org>.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2016.10.20. 투고, 2016.11.13. 심사, 2016.11.17. 게재확정)

<국문초록>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나 희 량**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추이와 그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WTO의 다자간무역질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세계와 대동소이한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도 세계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는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소의 경우에도 2010년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경제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는 해당국가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묶여져 있는 역내국가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국가들이 처할 수 있는 유사한 WTO 분쟁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10년대 이후 WTO 제소 및 피소 대상 주요 국가가 되었다. 적절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고 피소를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WTO 무역분쟁,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미국-베트남 간 냉동새우 관련 반덤핑분쟁, 보호무역주의

<Abstract>

## WTO Dispute Settlements of Southeast Asia: The Trend and Challenges

RA Hee Ry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WTO trade disputes of Southeast Asia, and looks for the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trend of the disputes of Southeast Asia shows similarities with that of the world. After 2012, owing to the prolonged global recession and trade protectionism, W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likely to grow especially in Indonesia and Vietnam. Considering the increasing Southeast Asia's regional trade and increased economic interactions, the individual dispute cases need to be understood and utilized not only for the country but also for the region. Individual countries can minimize the cost of dealing with the disputes and can establish the appropriate trade policy. Furthermore, through the reform and opening up, Southeast Asia would be able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reducing the costs caused.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Vietnam's case study to see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to deal with the disputes. Vietnam raised two subsequent complaint against U.S.'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frozen shrimp. For both occasions Vietnam achieved favorable results. This case gives lessons that Southeast Asian countries,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developing or regime-change country, need to take advantage of W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o called 'rule of law' to maximize the gains from trade. For this, Southeast Asian countries need to share the information and know-how of WTO dispute and strengthen the network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Key Words:** WTO Dispute Settlements, WTO Disputes of Southeast Asia, Vietnam and U.S., Complaint against the Antidumping Duties, Protectionism